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22-1호

강원도립대학교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22. 01. 19.까지 기획홍보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1월 12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직인
생략

1. 제안이유

- 대학 구조조정 업무 소관부서가 교학처에서 기획홍보처로 이관됨에 따라 대학구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교학처장에서 기획홍보처장으로 변경
- 교육부의 대학평가 지표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구조조정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학구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교학처장에서 기획홍보처장으로 변경 (제5조)
- 구조조정 평가기준 변경, 신입생 충원율 · 재학생 충원율 · 학과평가 등 기준지표 추가·조정 (제8조)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2. 01. 12.(수) ~ 01. 19.(수)
- 제출서식 : 별첨된 의견 제출 서식
- 제출방법 : 전자문서(공문) 및 이메일(jwlee1004@korea.kr)

붙임 1. 강원도립대학교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제2장 제5조, 제8조)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붙임1.

강원도립대학교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 제2장 구조조정의 일반원칙 제5조, 제8조 -

강원도립대학교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2장 구조조정의 일반원칙 제5조(대학 구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제8조(구조조정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대학구조조정위원회의 구성)의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 위원으로는 기획홍보처장, ...”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홍보처장, 위원으로는 교학처장, ...”로 한다.
- 제8조(구조조정의 기준)의 제2항 중 “구조조정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구조조정 대상 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 제8조(구조조정의 기준)의 제2항 1호 중 “신입생 충원율 : 입학정원 90% 미만인 경우”를 “신입생 충원율 :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 제8조(구조조정의 기준)의 제2항 3호로 “재학생 충원율 :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신설한다.
- 제8조(구조조정의 기준)의 제2항 4호로 “교내 학과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학과평가 결과 반영 시 1호 내지 3호는 산입하지 않는다”를 신설한다.
- 제8조(구조조정의 기준)의 제3항 중 “... 대학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제2항의 요건과 별도로 ...”를 “... 대학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장은 제2항의 요건과 별도로 ...”로 한다.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대학구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 위원으로는 기획홍보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종합정보관장, 학생생활관장이 당연직이 되고,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등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⑤ (생략)	제5조(대학구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홍보처장, 위원으로는 교학처장, ----- ----- -----. ③ ~ ⑤ (현행)
제8조(구조조정의 기준) ① (생략) ② 구조조정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입생 충원율 : 입학정원 90% 미만인 경우 2. 졸업생 취업률 : 대학 전체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되는 경우	제8조(구조조정의 기준) ① (현행) ② 구조조정 대상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입생 충원율 : <u>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u> 2. 졸업생 취업률 : 대학 전체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되는 경우 3. 재학생 충원율 : <u>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u> 4. <u>교내 학과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학과평가 결과 반영 시 1호 내지 3호는 산입하지 않는다.</u> ③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과·전공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단, 대학의 경쟁력 확보가 대학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제2항의 요건과 별도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강원도립대학교 기획홍보처	
연락처	(033) 660-8083